

제4장 사생활 침해 사례



제4장 사생활 침해 사례

사례 25

경비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3463, 3464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박○○
피 신 청 인	1. 한국방송공사 (KBS-1TV) 2. 케이비에스미디어(주) (KBS 미디어)
중 재 부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2015. 08. 28.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해배상 등 - 동의)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기에 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에게 제작진이 촬영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후속 촬영이 1~2분 간 계속되었음에도 신청인이 촬영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외국인들의 숙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의 초상을 공개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촬영 당시 소형 카메라로 본인을 찍고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방송에 나갈 것으로 인지하지 못했고, 방송사의 사전 예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위에 알리지 않고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해당 보도로 인해 지인들에게 근무 사실이 드러나 곤란을 겪고 있다며 1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으로부터 촬영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직업이 공개됨으로써 사생활 침해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KBS-1TV - 『이웃집 찰스』 프로그램 (2015년 8월 25일자, KBS 미디어 8월 25일자 다시보기면)

■ 내 용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주 문**

1. 피신청인들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KBS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 및 VOD 서비스에서 신청인과 관련된 영상을 삭제하여 검색되지 않도록 하며, 향후 해당 화면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3. 피신청인들이 위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들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09. 0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